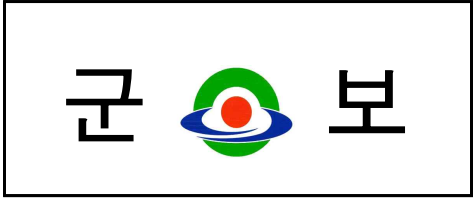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629호 2025. 7. 3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고 시

○하천점용 허가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5-85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71)

하천점용허가 고시

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 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.

2025년 7월 3일

예 천 군 수 (인)



구 분	하천점용허가
하 천 명	한천(지방하천)
점 용 자 주 소	예천군 안전재난과장 (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)
위 치	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582번지
점용면적 (허가량)	5,339㎡
점용목적	공작물의 설치
사업개요	지방하천 한천(동본교 상류) 고수부지 정비공사
점용기간	2025년 7월 3일 ~ 영구